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6. 29. 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6월 7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1년 6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1. 6. 2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국장 지우선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의 내용 중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업무분장에 맞지 않는 조문 및 기타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변경(안 제2조제4호나목)
 - 시작일을 12월 1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
-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 자격 규정 변경(안 제6조제1항제7호)
 - 기관명과 직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던 규정을 '재난 및 안전 관리와 관련이 있

는 기관 및 단체의 장'으로 변경함

- 재난안전대책본부 중 총괄조정관 변경 및 지원협력관 신설 (안 제18조제1항제3호, 안 제18조제1항제4의2호)
 - 총괄조정관을 행정지원국장에서 안전교통국장으로 변경
 - 지원협력관을 신설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맡게 함
- 대책본부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에 지원협력관을 추가함(안 제20조)
- 재난취약계층의 예시에 '임산부' 포함(안 제49조)
- 기타 표현 정비(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1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○ 본 안건은 조례의 내용 중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업무분장에 맞지 않는 조문과 그 밖에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의 시작일을 12월 1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였고
- 안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 자격 규정을 변경하였으며,
- 안 제18조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업무분장에 맞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을 행정지원국장에서 안전교통국장으로 변경하고, 지원협력관을 신설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맡게 하였으며,
- 안 제20조에서는 대책본부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에 지원협력관을 추가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 자격을 포 괄적으로 규정하고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관련 조례와 계획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, 조례를 개정함으로 써 재난대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353 호 제출연월일: 2021. 6. 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의 내용 중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업무분장에 맞지 않는 조문 및 기타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변경(안 제2조제4호나목)
 - 시작일을 12월 1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
- 나.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 자격 규정 변경(안 제6조제1항제7호)
 - 기관명과 직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던 규정을 '재난 및 안전 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'으로 변경함
- 다. 재난안전대책본부 중 총괄조정관 변경 및 지원협력관 신설 (안 제18조제1항제3호, 안 제18조제1항제4의2호)
 - 1) 총괄조정관을 행정지원국장에서 안전교통국장으로 변경
 - 2) 지원협력관을 신설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맡게 함
- 라. 대책본부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에 지원협력관을 추가함(안 제20조)
- 마. 재난취약계층의 예시에 '임산부' 포함(안 제49조)
- 바. 기타 표현 정비(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: 재난취약계층을 명시함에 '임산부' 추가할 것을 권장 받고 이를 수용함

라. 입법예고(2021. 4. 8. ~ 4. 28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4호나목 중 "12월 1일"을 "11월 15일"로 한다.

제5조제5호 중 "위원장"을 "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 이라 한다)"을 "위원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

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되며"를 각각 "되고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되며"를 "되고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되며, 통제관을 보좌하고"를 "되고, 통제관을 보좌하며"로 한다.

- 3. 총괄조정관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, 대책본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다.
- 4의2. 지원협력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,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.

제20조 중 "차장·총괄조정관·통제관 및"을 "차장, 총괄조정관, 통제관, 지원협 력관,"으로 한다.

제49조 중 "장애인"을 "장애인, 임산부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자연재난대책기간"이란 자	4
연재난 중 「재난 및 안전관	
리 기본법」시행령(이하"영"	
이라 한다) 제13조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	
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	
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	
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	
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	
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	
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	
의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	
•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	
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	
조정할 수 있다.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겨울철의 경우: 매년 <u>12월</u>	나 <u>11월</u>
<u>1일</u> 부터 다음 연도 3월 15	15일
일까지	
5. ~ 10. (생 략)	5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	제5조(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
기능)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	기능)

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안전관리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<u>위원장</u>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)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- 1. ~ 6. (생략)
- 7.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장
 - <u>가. 코레일 수도권 서부본부</u> 장
 - <u>나.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</u> <u>직할지점장(영등포)</u>
 - <u>다. (주)케이티(KT)영등포지</u> 사장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
위원장(이하"위원장"이라 한
<u>다)</u>
제6조(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) ①
<u>위원장</u>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 는 단체의 장

- <u>라.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</u> 부지사장
- 마. 서울도시가스 서부지사장바.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장
- 사. 남부수도사업소장 아. 남부도로사업소장
- 8. (생략)
- ②・③ (생략)
- 제18조(대책본부 구성 등) ① 대 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성한다.
 - 1. 본부장은 구청장이 <u>되며</u>, 대 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차장은 부구청장이 <u>되며</u>, 본 부장을 보좌한다.
 - 3. 총괄조정관(또는 지원관)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, 대책 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.
 - 4.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(소)의 장이 <u>되며</u>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.

<신 설>

8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(대책본부 구성 등) ①
1 <u>되고</u>
2 <u>되고</u>
3. 총괄조정관은 안전교통국장
이 되고, 대책본부의 업무 지
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4
<u>되고</u>
<u>.</u>
4의2. 지원협력관은 행정지원국
장이 되고, 대책본부의 행정지

- 5.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<u>되며, 통</u>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.
- 6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20조(직무대행)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<u>차장·총괄조정관·통제관 및</u>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- 제49조(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
<u>다.</u>
5
<u>되고, 통</u>
제관을 보좌하며
6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직무대행)
차장, 총괄조정관, 통제관, 지원
협력관,
,
제49조(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
원)
<u>장애인, 임산부</u>